

국세청은 실종 아동·장애인 찾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발견시에는 제보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하 (당시 만 4세 9개월, 여)
 발생일자 : 1975. 05. 09 (금)
 발생장소 : 충북 청주시 운전동
 신체특징 : 왼쪽 배꼽 밑에 데인 자국, 검은색 단발머리
 줄무늬 티셔츠, 남색 긴 바지, 꽃고무신

자료 제공: 어린이재단, 호국유신, 보건복지부 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 제보처: 경찰청 국번없이 182

종교인소득에 대한 신고 안내

귀 단체의 발전과 소속 종교인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8.1.1.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시행됩니다.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써,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속 직원들의 세금과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소속 종교인과 직원들에 대해 일괄로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종교인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단체의 경우 상시근무 인원수에 관계없이 「원천세 반기별 납부」 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이를 이용하면 매월 납부하는 부담 없이, 1년에 2회(7월과 1월)만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면의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 안내」를 참조하여 2017.12.31.까지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도 시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견을 청취하고, 설명회 개최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성실신고 지원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도 안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통합검색 ▶ '종교인' 입력



신고·납부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원천세)

2017. 12. .

세무서장 (관인생략)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 안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17.12.31.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시면 요건 등을 검토하여 2018.1.31.까지 승인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기별 납부」를 통해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종교인소득 신고·납부 절차

- 종교인에게 소득 지급 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선택 가능
 - 원천징수 이행 시, 종교단체는 매월분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신고·납부
 - ⇒ 반기별 납부는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 마무리
 - 원천징수 미이행 시, 종교인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2. 반기별 납부 신청요건

- 종교단체의 경우 상시근무 인원수(직전 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3. 반기별 납부 신청기간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 2017.12.1.~12.31. 신청

* 승인시 2018년 1월~6월 소득 지급분을 2018년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

4. 반기별 납부 신청방법

● 전자(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 우편 또는 방문 국세청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국세청 홈페이지[세무서식]에서 서식 내려 받기)